

이사회 운영규정

2022.03.31

주식회사 위메이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권한]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제 5 조 [의장]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종류]

제 7 조 [소집권자]

제 8 조 [소집절차]

제 9 조 [결의방법]

제 10 조 [부의사항]

제 11 조 [이사회 내 위원회]

제 12 조 [감사의 출석]

제 13 조 [관계인의 출석]

제 14 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제 15 조 [의사록]

제 16 조 [간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09. 06. 29

개정 2013. 05. 20

개정 2013. 07. 24

개정 2014. 05. 09

개정 2022. 03. 3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위메이드(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 5 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의장이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 34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둘째달(2 월, 5 월, 8 월, 11 월)에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 제 2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영업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9 조(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12)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4) 이사·감사의 보수
-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서의 보고
-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연간,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및 변경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2) 중요한 신규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존 사업부문의 중단
-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4) 공동대표의 결정
- (5)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6) 중요한 사규(내부회계관리규정, 이사회운영규정, 임원처우규정,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 (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8) 간합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10 억원 이상(또는 12 개월 누적금액 30 억원 이상)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및 그 처분
- (2) 매입대금 10 억원 이상(또는 12 개월 누적금액 30 억원 이상)의 자산의 취득
- (3) 결손의 처분
- (4)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5) 신주의 발행
- (6)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7) 준비금의 자본전입
- (8) 전환사채의 발행

(9)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0) 10 억원 이상(또는 12 개월 누적금액 30 억원 이상)에 해당하거나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를 벗어난 자금차입 및 보증

(11) 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대한 매각, 담보제공

(12) 회사의 중요한(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0 분의 10 이상) 지적재산권에 대한 매각

(13) 라이선스(해당지역에서의 유통 및 서비스 권리) 부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단, 라이선스 부여의 경우 그 규모(판권비)가 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0 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14) 10 억원 이상(또는 12 개월 누적금액 30 억원 이상)에 해당하거나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를 벗어난 비용의 지출

(15)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시에 자기주식부여방식을 택한 경우 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16) 자기주식의 소각

(17) 이익배당, 분기배당에 관한 사항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2.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1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2 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3 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4 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 16 조(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이사회 주관부서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5.20)

이 규정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24)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5.9)

이 규정은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3.31)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